

제 1492 호
1988. 3. 12

발행인: 서울특별시 김 용 래
편집인: 공 보 진 서 정 화
전화: 781-8111~3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
전화: 738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공판시행	
'88 년제 1 회 좌상심 사결 과및시 상내역시달	3
◎ 교육규칙	
제 321 호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장제의 양정에 관한 규칙증정규칙	8
제 322 호 : " " " " 당직및리 상근무규칙증개정규칙	9
◎ 고 시	
제 107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세칙승인	11
제 156 호 : " " " "	11

(이면계속)

상									
말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양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161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.....	12
제 165 호 : " " " 승인.....	12
제 171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지적.....	12
제 178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.....	13

㉔ 사업소고시

한강관리사업소제 4 호 : 하천점용허가.....	1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㉕ 공 고

제 17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실시 계획공람.....	15
제 180 호 : 구로제3구역주택개발조합설립변경 (정관)인가불위한공람.....	16
제 189 호 : 서울특별시세입징수관공인신조공고.....	16
제 191 호 : 비료생산업종목추가허가.....	25
제 199 호 :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.....	28
제 200 호 : 구로제 2 구역주택개발재개발사업공사완료.....	28
제 201 호 : 봉천제 6 구역주택개발재개발사업공사완료.....	29
제 202 호 :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동록및폐기.....	30

㉖ 사업소공고

탄천하수처리장제 2 호 : 물품구매 (단가계약) 재입찰공고.....	32
---	----

㉗ 사 령

공 문 시 형

"관인생략"
서울특별시

시정 01226-81

(731-6151)

'88. 3. 12.

수신: 수신기참조

제목: '88년제 1회 착상심사결과 및 시상내역 시달

1. '88년도 제 1회 착상심사결과 및 시상내역을 별첨과 같이 시
달함.

첨부: '88년 제 1회 채택작상내역. 등.

서울특별시장

(시정개발담당관 직절)

수신처: 시산하건기판

○ 채택 착상내용		
착상등급	착상내용	비고
동상	<p>○ 접수번호 5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로불 청소차 지하수활용 급수탑 설치 · 원개 가로불청소차의 홀보급은 노면에 설치된 소방용 급수탑역시 취수하여 가로청소, 공혈, 녹지대, 가로수등에 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사에 접수된 지하수는 하수도로 흘러보내고(남비)있으므로 지하철역사에 접수된 지하수물 지상에 급수탑을 설치하여 물청소에 공갈토록 개선 <p>(효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간 상수도 151,200㎥ 절감으로 연간 수도료 61,992천원 예산절감 · 소방용 물을 사용치 않고 남비되던 지하수 이용으로 에너지 재활용 <p>착상자: 청소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정기</p>	<p>○ 시장표창</p> <p>○ 시상금: 100만원</p>
정리상	<p>○ 접수번호 1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륜차량 취득세 납부제도 개선 · 이륜차량의 등록신고 및 번호판 부착업무는 관할동에서 취급하고 등록에 따른 취득세 과징은 구청 세무2과에서 하므로 등록신고업무와 취득세 과징업무가 2원화되어 있던것을 두사무소에서 취급토록 일원화 <p>(효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세법 개정없이 두사무소에서 등록신고 업무와 함께 취득세 과징업무를 취급하므로 시민면의 제공 및 취득세 징수를 제고 · 착상자: 영등포구청 세무2과 지방행정서기보 고경택 " 지방행정서기 이용범 기획감사과 " 합기법 	<p>3인</p> <p>공동제안</p> <p>○ 시장표창</p> <p>○ 시상금: 30만원</p>

작성등급	작 상 내 용	비 고
장 리 상	<p>○ 접수번호 5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밤섬(천색도매지)조망대 설치 - 마포대교 하류 밤섬은 갈대, 갯버들등 자연섬으로 되어있어 청동오리, 갈매기, 왜가리, 도요새등 조류 총 56종 8,829개체의 천새가 도래하고 있으나 이것을 보호 관찰하는 시설이 없는 조망대를 설치하여 자연관찰 교육장으로 활용 <p>(효 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근주민, 학생, 어린이의 자연보호 및 자연관찰 교육장소로 활용 · 천새의 명소로 관광코스로 활용토록 추진 · 착상자: 한강관리사업소 지방일업기과 최용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표창 ○ 시상금: 30만원
장 리 상	<p>○ 접수번호 60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적업무 처리개선 · 민원인의 호적 계신고(출생, 혼인, 분가, 사망, 이혼, 상속, 전적, 취적등)후 호적등초본이 필요한 사람은 다시 구청에 귀청하여 신고처리 결과에 따른 호적 등·초본등을 발급받던 것을 · 최초 호적계신고 접수시 별도로 우편료 및 수수료를 사전집수 받아 신고서 처리후 민원인이 원하는 증명을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개선 <p>(효 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청 담당자의 업무량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민원인은 두번씩 구청에 왕래하는 불편해소 ·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임 · 착상자: 강서구 시민봉사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표창 ○ 시상금: 30만원
장 리 상	<p>○ 접수번호 69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변차선계 운영 · 강변도로인 동호대교-성수대교와 잠실대교-천호대교간은 4차선 도로이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표창 ○ 시상금: 30만원

착상등급	착 상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수대교-잠실대교간은 2차선도로이므로 병목현상이 극심하던것을 성수대교-잠실대교간 2차선을 3차선으로 구획하여 오전, 오후로 가변 차선제를 운영토록 개선 (효 과) · 극심한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이여 · 착상자:시경 교통과경위 김 현 호 	
<p>○ 제 2 안 주 가 분</p>		
착상등급	착 상 내 용	비 고
<p>노력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접수번호 4번 - 주민등록 (일감) 사고 방지물 위한 착상 · 현행 동사무소에서 전·출입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 또는 주소란이 부족한 경우 배치 주민등록표의 주소란 또는 가족란만을 절취 사용하므로 남은 부분은 폐기처분하고 있는바 · 주민등록표의 주소란 또는 가족란만을 별도로 인쇄하여 사용토록 개선 (효 과) · 주민등록표의 주소란 또는 가족란을 별도로 인쇄하여 사용하므로 낭비없는 예산절감 · 일부분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Loss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조리 원천 해소 · 착상자: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박 현 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표창 ○ 시상금: 10만원
<p>노력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접수번호 19번 - 양수기 (수도머터리) 제조납품 개선 · 현행 수도제압기의 기동번호를 양수기 외각부분에 조작하여 사용하므로 변조등의 가능성이 많은바 양수기 기동번호 및 시마크를 양수기 내부 문자판면에 식인토록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표창 ○ 시상금: 10만원

작성등급	작 상 내 용	비 고
	<p>(호 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수기 내부문자판에 가물번호 및 시마크를 삽입하므로 양수기의 부정조작 및 부설 급수조절 작성자: 업무과 지방행정서기 김학순 	
노 령 상	<p>○ 접수번호: 53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단보도상의 길서유지 방안 현행 최단보도 표시는 시각적 또는 좌측통행 표시가 애매하던 것을 화살표 모양으로 개선 <p>(호 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좌측통행 표시의 효과가 커 길서유증이 기대됨 작성자: 관악구 문천11동 지방행정서기 김원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표창 ○ 시상금: 10만원
노 령 상	<p>○ 접수번호: 65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소형화 현행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 필증의 규격이 16절 경자크기(19cm×26.8cm)로 휴대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하던 것을 명함정도(9cm×6cm)의 크기로 개선 <p>(호 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필증이 소형화되므로 휴대 사용하기에 크게 편리함 작성자: 영등포구 문래2동 지방행정서기 이현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표창 ○ 시상금: 10만원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교육규칙</p> <p>(공 포 문)</p> </div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징</p>		<p>지의 양정에 관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8. 3. 5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연준</p>

◎교육규칙 제 321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
징계의말장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 징
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"서울특별시교육위원
회의 중점징화대상비위"를 "중점
징화대상비위"로 한다.

제4조 본문단서중 "서울특별시교육
위원회에서 중점징화대상으로 지정
된 비위"를 "중점징화대상비위"
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
요령) ①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지방
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
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
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
의견을 기재할때는 요구하는 징계
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

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,동조동항
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
기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
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
할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
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
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
의 관련도와 징계할 의지의 정도외
소행, 근무성적, 개전외정, 기타의 정
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중
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8조중 "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
중점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"를
"중점징화대상비위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공 포 문)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당직 및 비상
근무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제 공포한다.

1988. 3. 5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

교육감 최 열 관

◎교육규칙제 322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
비상근무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당직 및 비
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① 당직 및 비상근
무에 관하여는 공무원당직 및 비
상근무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
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
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
(교육구청, 사립소)으로 한다. 다
관, 공·사립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
교는 "초중등학교 당직근무규칙"
(문교부훈령 제 445 호, 87.12.28)
에 따른다.

제 3 조중 제 3 항을 삭제하고 제 4 항
을 제 3 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
과 같이 한다.

③ 당직책임인원이 파손하여 2 인이
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 인당
월 1 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
지 못한다. 여액은 공무원당직 및 비상
근무규칙 제 11 조제 4 항에 의거 당
직근무자본 1 인으로 편성할 수
있다.

제 11 조의 제목 "비상근무요령"을

"비상근무의 종류"로 한다.

제 14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 14 조의 2 (필수요원의 지정) ① 각
급 기관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
닌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
여의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
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
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
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
1 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
선적으로 지정하며, 문장보좌관, 타자
요원, 통신요원등 사무보조에 필요
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제 1 항중 "신고하여야 한다"
를 "공무원직인원 비상근무시간중에
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"로 하고
동조제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의출
타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긴급
사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
있도록 직정인원을 고려하여 승인하
여야 한다.

제 16 조를 삭제한다.
별표 제 5 호사식(비상소집결과보고서)
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 5 호서식]

비상소집결과보고서

1. 기관명:
2. 비상근무알림 접수일시: 년 월 일 시 분
3. 비상소집 응소현황

구	분	총 원	응 소 대 인	응 소 인 원	응 소 율 (%)	시 간 별 응 소 현 황			
						1 시간 이 내		1 세 간 후 2 시 간 이 내	
						인 원	비 율	인 원	비 율
총 계	계								
	필수요원								
	일반요원								
분 기	계								
	필수요원								
	일반요원								
소 속 기 관	계								
	필수요원								
	일반요원								

보고요령

1. 총원은 고용원이상 정규직 전원을 기재하여야 함.
2.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.출장.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만을 말함.
3.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우선 전화보고후 서면보고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07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
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
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
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3. 12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 : 서대문구북아현동 321-7
(주) 동진주택 배 학 기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
가. 위치 : 노원구중계동 103 번지의
6 필지
나. 면적 : 6,498㎡
다. 규모 : 아파트 5층 2동 210 세대
4. 사업시행기간 : '88.2-'88.9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56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
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
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
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3. 12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2. 사업주체 : (주)태근건설 대표사공관
3. 사업시행지의 위치, 면적 및 규모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양천구신철동
316번지 6호
나. 면적 : 838.64㎡
다. 규모 : 연립주택 3층 1동 18세대
4. 사업시행기간 : '88.3-'88.10.30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61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동법 시행령 제 32 조 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.

1988. 3. 12.

서울특별시장

나 음

가. 공사명: 민영주택 건설사업

나. 사업주체: (주)중앙건설

대표 조승규

다.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

1) 위치: 구로구 시흥동 산 22-6 산 24-1

2) 면적: 18,898 평방미터

3) 규모: 면립주택 3층 12동 222 세대, 부대 및 복리시설 1층 2동

4) 사업시행기간: 1987.12-1988.12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65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3. 12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: 민영주택 건설사업

2. 사업주체: 강서구 영창동 270-1

(주)성원주택 원 총 권

3.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

가. 위치: 영문동 152-2의 7필지

나. 면적: 3,166.09 ㎡

다. 규모: 아파트 4-5층 3동 83세대

4. 사업시행기간: 88.2 - 88.12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71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지적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 호(88.1.12)

호 변경전경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원제도서는 관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8.3.12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 시설(도로) 지적승인공시

번호	구분	등급	유형	폭	원	연	장	기	정	종	점	비고
1	기정	소로	2류	8m	150m	봉원동 301	봉원동 738-156					폭원 및
	변경	"	1류	16-15m	220m	"	" 288-3					연장조성
2	기정	중로	3류	12m	353m	신흥동 264-61	신흥동 103-129					가각조각
	변경	"	"	"	"	"	"					

* 별첨표시 도면과 같음(계제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78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3. 12

서울특별시

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: 삼익건설산업
대표 문정열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가. 위치: 구로구 고척동 141-1의 6필지
나. 내지면적: 26,578.29㎡
다. 건축면적: 70,325.99㎡
라. 규모: 아파트 13층 5동 715세대
마. 사업시행기간: 1988.3-1989.5

4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폐지 결정									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	
1	기정	소로	1	0	10	140	구로구 교척동 173-10	구로구 교척동 139-2	
	변경	"	1	0	10	140			폐지
2	기정	소로	2	0	8	250	구로구 교척동 123-10	구로구 교척동 50-49	
	변경	"	2	0	8	74	구로구 교척동 141-1		175개 폐지
3	기정	소로	2	0	8	100	구로구 교척동 137-21	구로구 교척동 139-2	
	변경	"	2	0	8	100			폐지

사업소고시

◎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4호

하천철용허가

하천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

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철용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1988.3.12

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

허가 년월일	위 치	지 목	철용면적	철용목적	철용기간	허가받은자	
						주 소	성 명
'88.3.8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 하류(불광천과 한강합류지점)	천	115.87㎡	실지명이 취위 작업장	'88.3.8 - '88.9.23	서울특별시 마포구 경평동 상수동 303-1	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78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실시계획공람

1. 아래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등법시행령 제 27 조

- 의 2 규정에 의거 공로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함
 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.

1988. 3. 12

서울특별시청

가. 개요

도시계획시설결정	지 적 승 인	사 업 명	사 입 규 모	사 업 기 간
서울시 고시 제 119 호 ('88. 2. 19)	서울시 고시 제 142 호 ('88. 3. 2)	신정간이 배수 원프장 시설공사	모타펌프 200HP X 3대 검물 및 기기 1식	인가일로 부터 1년간

나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청

다. 사용할토지: 별첨조서

라. 공람장소: 강서구청, 토목과, 전설관리과

마. 공람기간: 공로일로 부터 14일간

바. 기타상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토목과에 문의바람

토 지 조 서

번호	지 번	지목	기적	전입	소 유 자 주 소 성 명	소유자의 권리명세
			(㎡)	(㎡)		
1	양천구 옥1동 404-2	주거	1,041	186	국유지	
2	" 404-1	전	988	486	영등포구 영등포동 5 가 298 김성인의 1인	
3	" 409-17	담	1,977	9	국유지	
	계		4,006	680		

◎서울특별시 공고 제 180 호

구로 제3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조합
설립변경(정관)인가를 위한 공람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819 호 (86.11.13)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4 호 (87.6.18)로 사업시행 변경 인가된 구로 제3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조합의 정관중 일부를 개정요가 도시재개발법 제 2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88.1.22. 자 정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이를 인가하고자 같은법 제 15 조에 의거 공람공고한다.
2. 관제 서류는 구로구청 주택과와 당해 조합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안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있다.

1988. 3. 12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고내용

- 1) 사업의 명칭 : 구로 제3구역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

- 2) 사업시행자 : 성명-구로 제 3. 구역 주택개발 재개발 조합
주소 : 구로구 구로동 179-1

- 3) 변경 내용 : 정관중 제 7 조(조합원의 자격) 제 14 조(총회), 제 18 조(대의원회), 제 30 조(국공유지대입방법) 제 31 조(국공유지대입 대입의부담방법), 제 32 조(관리처분 계획기준)의 일부 개정

- 4) 공람기간 : '88.3.9 ~ '88. 4. 3 (30 일간)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9 호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공인신청 공고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인규칙 제 7 조 및 제 9 조에 의거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8. 3. 12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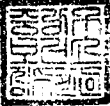





서울특별시장
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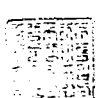
1. 공인명 : 별첨
2. 사용개시일자 : '88. 1. 1.
3. 공인의 인명 : 별첨

















공 인 명	인 영 규 격	사 용 일 자	비 고
중량구세입징수관인	20m정방형	'88. 1. 1	신 조
중량구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중량구보건소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중량구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보건소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보건소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보건소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보건소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중량구주택비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중량구주택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주택비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주택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주택비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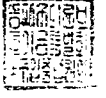




공 인 명	인 영 규 격	사 용 일 자	비 고
양천구주택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1.8 지방행	'88. 1. 1	신 조
서초구주택비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주택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주택비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주택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주치장시설비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
















공 인 명	인 영 규 격	사 용 일 자	비 고
양천구외토로호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지방형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도시개발사업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중랑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노원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양천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서초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세입징수관인	2 "	'88. 1. 1	신 조
송파구 " 수입금출납원인	1.8 "	'88. 1. 1	신 조

인				
인	중랑구정수관인	중랑구 수입금출납원인	노원구정수관인	노원구사무1과 수입금출납원인
인				
인	서울특별시 양천구정수관인	서울특별시양천구 수입금출납원인	서초구정수관인	서초구 수입금출납원인
인				
인	송파구정수관인	송파구 수입금출납원	중랑구 보건소정수관인	중랑구 보건소 수입금출납원인
인				
인	서울특별시노원구 보건소정수관인	서울특별시노원구 보건소분임수입원인	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정수관인	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

인				
부인	서초구정수관인 (보건소)	서초구수입금출납 원인(보건소)	성곽구보건소세입 금수관인	성곽구보건소 수입금출납원인
인				
부인	주택비특별회계 중앙구세입금수관인	주택비특별회계중앙 구수입금출납원인	주택비특별회계 노원구정수관인	주택비특별회계노원 구수입금출납원인
인				
부인	양천구주택비 특별회계정수관인	주택비특별회계양천 구수입금출납원인	서초구주택비특별 회계세입금수관인	서초구주택비특별회 계수입금출납원인
인				
부인	성곽구주택비특별 회계세입금수관인	성곽구주택비특별회 계수입금출납원인	중앙구수처리장비 특별회계정수관인	중앙구수처리장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

인 영				
인 영	노원구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징수관인	노원구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양천구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징수관인	양천구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
인 영				
인 영	서초구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징수관인	서초구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송파구하수처리장 비특별회계징수관인	송파구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
인 영				
인 영	중랑구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징수관인	중랑구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노원구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분임징수관인	노원구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
인 영				
인 영	양천구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징수관인	양천구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서초구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징수관인	서초구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

인 영				
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
인 영				
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
인 영				
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
인 영				
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이사장직인

인 영				
공 인 명	양천구수도사업 특별회계징수관인	양천구수도사업특별 회계수입금출납원인	서초구수도사업특별 회계징수관인	서초구수도사업특별 회계수입금출납원인
인 영				
공 인 명	송파구수도사업비 특별회계징수관인	송파구수도사업비 특 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	중랑구도시재개발 사업기금징수관인	중랑구도시재개발사 업기금수입금출납원인
인 영				
공 인 명	노원구도시재개발사 업기금징수관인	노원구도시재개발사 업기금수입금출납원인	양천구도시재개발사 업기금징수관인	양천구도시재개발사업 기금수입금출납원인
인 영				
공 인 명	서초구도시재개발 사업기금징수관인	서초구도시재개발사 업기금수입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재개발사 업기금송파구징수관인	송파구도시재개발사 업기금수입금출납원인

◎서울특별시 공고 제 191 호

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

비료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 조 제 5 항과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하였거 같은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8년 3월 12일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번호: 제 1 ~ 2 호
2. 허가년월일: 1988년 3월 10일
3. 성 명: 제일제당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영희
4. 주 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1245 반포아파트 95-107
5. 사업장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람동 93번지
6. 상 호: 제일제당주식회사
7. 비료의종류및종목: 아미와갈음
8.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: 아래와 같음
9. 생산능력: 아래와 같음

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 내역

비료의종류 및 품목	보 증 성 분 량		기타의 규격 (%)	생산능력 (년간, 톤)	허가 년월일
	유효성분량(%)	유 제 성 분 량 (%)			
제 2 종 복합비료 17-0-17 (수도추비용)	질소전량: 17 수용성加里: 17	- 질소, 인산, 가리 각각의 최대 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%에 대하여, • 워정산화물: 0.005 • 비 소: 0.004 • 아 질 산: 0.02 • 뷰렛태일소: 0.01 • 실 파 인산: 0.005	유리황산 : 0.5% 이하	45,000	88.3.10

비료의 종류 및 품 목	보 증 성 분 량		기 타 의 성 분 (%)	생산능력 년감, 톤	허 가 년월일
	유효성분량(%)	유 해 성 분 량 (%)			
제 2 중부합비료 14-0-14 (사과, 배, 오 이, 기비용)	질소 전량: 14 수용성질소: 14 수용성인산: 0.3	- 질소, 인산, 가리 각 각의 최대 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% 에 대하여, • 황정산화물: 0.005 • 비 소: 0.004 • 아 질 산: 0.02 • 뷰렛태질소: 0.01 • 실 파민산: 0.005	유리황산: 0.5% 이하	45,000	88.3.10
제 2 중부합비료 11-6-4 (수 도 용)	질소 전량: 11 가용성인산: 6 수용성질소: 4 구용성고토: 1	1. 위와같음 2. 가용성인산 함유율 1%에 대하여, • 카드뮴: 0.00018	위와같음	45,000	88.3.10
제 4 중부합비료 (액 제) 6-4-5 (수도, 사과, 오 이 연면시비 생 장용)	질소 전량: 6 수용성인산: 4 수용성질소: 5 수용성인산: 0.3 수용성고토: 1	- 질소, 인산, 가리 각 각의 최대 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% 에 대하여, • 황정산화물: 0.005 • 비 소: 0.004 • 아 질 산: 0.02 • 뷰렛태질소: 0.01 • 실 파민산: 0.005	-	600	88.3.10

비료의 종류 및 품목	보 증 성 분 량		기 타 의 규격 (%)	생산능력 년간, 톤	허 가 년월일
	유효성분량(%)	유격성분량(%)			
제 4 중복합비료 (액제) 10-4-6 (배추, 참외, 수 박, 엽면시비 생 장용)	질소 전량: 10 수용성인산: 4 수용성가리: 6 수용성붕소: 0.5 수용성고토: 1	- 질소, 인산, 가리 각각 의 최대 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% 에 대하여, • 황철산화물: 0.005 • 리 소: 0.004 • 아 철 산: 0.02 • 뷰렛제질소: 0.01 • 설 카 민 산: 0.005	-	600	88.3.10
제 4 중복합비료 (액제) 2-8-2 (배추, 무우, 엽 면시비 고정자용)	질소 전량: 2 수용성인산: 8 수용성가리: 2 수용성붕소: 0.1 수용성망간: 0.1	위 와 같 음	-	600	88.3.10
제 4 복합비료 (수용제) 14-10-10 (수도, 사과, 배, 배추, 무우, 엽면 시비 성장용)	질소 전량: 14 수용성인산: 10 수용성가리: 10 수용성붕소: 3 수용성고토: 1	위 와 같 음	-	600	88.3.10
제 4 중복합비료 (수용제) 3-18-18 (수도, 사과, 배, 복숭아, 엽 면시비 결실용)	질소 전량: 3 수용성인산: 18 수용성가리: 18 수용성붕소: 3 수용성고토: 1	위 와 같 음	-	600	88.3.10

이로의 종류 및 품목	보 증 성분 분 량		기 타 의 격 (%)	생산능력 년지, 본	허 가 면별일
	유효성분량(%)	유해성분량(%)			
제 4 중복합비료 (수용제) 8-10-12 (고추, 엽면시 이용)	질소 전량: 8 수용성인산: 10 수용성가리: 12 수용성붕소: 0.5 수용성고토: 1	질소, 인산, 가리 각각의 최대 조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%에 대하여 · 황병산화물: 0.005 · 비 소: 0.004 · 아 질 산: 0.02 · 뷰렛배질소: 0.01 · 철 과 인 산: 0.005	-	600	88.3.10
제 4 중복합비료 (수용제) 12-12-12 (감수, 오이, 토마토, 수박, 화훼 엽면시 이용)	질소 전량: 12 수용성인산: 12 수용성가리: 12 수용성붕소: 0.5 수용성고토: 1	위 와 같 음	-	600	88.3.10

○서울특별시공고 제 199 호
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
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1 항의 규정에
 의거 전기공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하였
 기 동법 제 42 조에 의거 이물 다
 음과 같이 공고한다.
 1988.3.12.
 서울특별시장

면허번호	소재지	상 호	대표자	위반사항	취소일
946	성수 2 가 315-1	태 양 진 기	민병옥	동법 7 조 1 항	88.3.
1134	성수 2 가 49-47	미 화 전 기 공 사	우동환	"	"
712	충정동 79-5	삼 원 전 공 사	문영준	"	"

○서울특별시공고 제 200 호
**구로제 2 구역 주택개발
 재개발사업 공사 완료**
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706 호 (85.10.
 19)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
 시 제 589 호 (87.8.22)로 사업시
 행변경 인가된 구로제 2 구역 재개
 발사업이 공사완료되었기 도시재개
 발법 제 48 조 규정에 의하여 공
 사완료 공고한다.
 1988.3.12.
 서울특별시장

- 공 고 내 역 -

가. 사업명칭 : 구로제 2구역 주택개발
재개발사업

나. 사업자 : 구로구구로6동122-7
구로제 2구역 재개발
조합장 원종선

다. 사업기간 : 85.10.19 ~ 87.12.31

라. 사업계획에 의한 공종별공사내역

1) 건축시설

규 모 : 복합상가아파트 1동
지하 2층-지상 3층:상가
지상 4층-지상 15층:
아파트 118세대

건축면적 : 2,542.42 평방미터
(건폐율 48.37%)

건축연면적 : 20,829.36 평방미터
(용적율 151.85%)

2) 토 지

면 적 : 5,256.2 평방미터

주차광장 : 4,472

도시계획도로 : 439

지 : 10,167

마. 사업비 재원별 내역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201 호

봉천제 6구역 주택개발
재개발사업 공사 완료

1. 서울특별시고지 제 36 호 (86.1.
14) 로 -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




시고시 제 423 호 (86.6.26) 로 사
업시행인가되어 서울특별시고
시 제 307 호 (87.4.30) 로 관리
처분계획인가된 봉천제 6구역 재
개발사업지구내 대하여 도시재개발
법 제 48 조 규정에 따라 아
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표한다.





88.3.12.

서울특별시장

공 고 내 역

1. 사업명칭 : 봉천제 6구역 주택개발
재개발사업
2. 위치 : 관악구봉천동산23번지일과
3. 시행자 : 봉천제 6구역 주택개발
조합장 조항강 박영화
4. 사업시행면적 : 15,389 평
5. 시행기간 : 86.1.14 ~ 88.2.29
6. 공사시행내역
아파트 10 ~ 15층 2동 239세대
연립주택 3층 1동 12세대
상가 2동 및 지하무대복리시설
7. 사업비재원별내역 (단위:천원)
가. 국민주택분양금 : 4,516,113
나.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금
: 5,953,620
다. 연립주택분양금 : 533,572
라. 상가분양금 : 1,650,430

<p>◎서울특별시공고 제 202 호</p> <p>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</p> <p>기구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른 회 계관계공무원 직인용 서울특별시회계 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 7조 규정</p>	<p>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설 조등록하고 동 규칙 제 11조석의 하여 이를 공고한다.</p> <p>1988.3.12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직인등록 및 폐기조서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직 인 폐 기 신 고 서</u></p> <p>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 직 명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분임지출원인 사 용 기 간 1982년 4월 1일부터 1988년 3월 7일까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직 인 폐 기 신 고 서</u></p> <p>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 직 명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분임물품출납원인 사 용 기 간 1982년 4월 1일부터 1988년 3월 7일까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직 인 등 록 조 서</u></p> <p>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 직 명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분임경리관인 사 용 개 시 일 1988년 3월 7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직 인 등 록 조 서</u></p> <p>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 직 명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부인직출회인 사용개시일 1988년 3월 7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직 인 등 록 조 서</u></p> <p>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 직 명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부인직출회인 사용개시일 1988년 3월 7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직 인 등 록 조 서</u></p> <p>회 계 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 서 명 (국, 청, 소) 중앙구청 직 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중앙구출납공무원인 사용개시일 1988년 1월 7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직 인 등 록 조 서</u></p> <p>회 계 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 서 명 (국, 청, 소) 노원구청 직 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노원구수입금출납인 사용개시일 1988년 1월 7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
사 업 소 공 고

◎서울특별시탄천하수처리장공고제 2 호

물품구매 (단가계약) 재입찰공고

1. 경쟁입찰에 붙이는 입찰전명 : 경유 연간 단가계약
2.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

품 명	규 격	단위	예정수량	입찰방법	입찰등록 마감일시	입찰일시	입찰장소
저유화 경유	유황 0.4% 이하	L	2,139,000	단가입찰	88.3.21 12:00	88.3.22 14:00	탄천하수처리장입찰실

3.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

- 가. 재무부령제 1722 호의 자격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내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분
- 나. 석유사업법 제 12 조에 의한 유류판매업허가를 득한분 및 정유제조업체
- 다.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찰전에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 (인감증명첨부)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.

4. 입찰보증금
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

보증금을 입찰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5. 입찰보증금 국고귀속
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는 입찰보증금은 당시에 귀속한다.
6. 기타사항 : 입찰참가자는 관공과에 비치된 물품 구매입찰 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당해계약의 특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장기신청 마감시까지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람.
7. 기타사항
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공과 경리계 (576-5847) 에 문의 하기 바람.

1983. 3. 12

서울특별시탄천하수처리장 (본입) 경리과

사 령

◎ 1988년 3월 5일

령 제 70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위	직 급
최선진	동대문구 부정장	중 광 구	(준비요원)	지방주이사관
김동훈	강 동 구	송 마 구		
김승걸	중 각 구	서 초 구		
김동일	서대문구	노 원 구		
박종욱	영등포구	작부대리	시립과학보	사무국장직대 지방서기관

령 제 71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
박위민	지방별정직 3급상당에 임함. 10호봉에 급함. 새충문화회관 사무국장에 포함.	신 구

령 제 72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박위민	원예 의하여 그직을 편함.	새충문화회관	지방별정직 4급상당

령 제 73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이원락	서울환경지청 파견 (88.3.5 - 88.5.31)	구 로 구	지방별정직 4급
김우걸	"	강 서 구	지방보전지원보

령 제 75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지숙	원예 의하여 그 직을 편함.	내무국 (의견과)	지방별정직 7급상당

◎ 1988년 2월 27일 영 제 76 호

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카스파
지방행정사무관 정. 양. 성
행정사무관에 임함.
부위장 미국의 지도와 근무를 명함.

88. 2. 27
대 통 령

◎ 공무원의 여행 기간 변경허가

1. 인사 01117-395(88.2.24) 호와 관련함.
2. 재개 01112-58(88.2.26) 호 요청한 재개발과장 박명화의 1명의 공무원의 여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함.

당 초 기 간	변 경 기 간	비 고
'88. 2. 26 - 3. 9 (13 일간)	'88. 3. 14 - 3. 26 (13 일간)	

◎ 국외여행명령사항

여 행 자			여 행 목 적	여 행 국	여행기간	정 비
소 속	직급 (직책)	성 명				
중앙건설 본 부	지방건축>정 (공사5부장)	김기석	서울대공원 놀이동산 (서울랜드) 건설에 따른 신진국의 각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 건관리운영 실태파악	일본, 미국	88.3.17 - 3.26 (10일간)	시 비
사회과	지방행정 사무관 (사회계장)	김용락	· 농아인 회의 참가 · 농아인 축구대회유 치에 관한 하당성 조사	오스트레일 리아	88.3.24 - 4.4 (12일간)	차회복지법인 한국정자정에 차 복지회 부담

서울특별시장